

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문

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
병무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 등을 위해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, 개정된 규정 중 주요(일부)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주요(일부)변경사항 ◇

* 2021.5.31. 일부개정(병무청훈령 제1784호)

- 고액 상습체납 공표 업체 선정제외 및 배정제한(제9조, 제11조, 제19조)
 -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「국세징수법」 제114조에 따른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선정제외 및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
-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선정 세부 기준 규정 신설(제8조)
 - 과기원 부설연구소 세부선정기준에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 확보 의무화
- 산업기능요원 정보처리분야 편입기준 정비(제27조)
 - 조기 학위 취득자가 편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에 상관없이 주전공으로 학위 취득한 사람은 편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 정비
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4촌이내 혈족 복무관리 배제(제33조, 제36조)
 - 복무부실 방지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관리 담당 지도교수가 4촌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복무관리 담당 배제
-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보호 명문화(제38조, 제38조의2)
 - 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계속 복무하고 싶은 근로환경 구축을 위하여 권익보호상담관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·조퇴 등의 연장복무계산 명확화(제53조, 제54조)
 - 무단지각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복무,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휴일 포함
-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점검 및 평가기준 등 개선(별표 4·5)
 - 가점 확대(신설) : 취업맞춤특기병 채용, 복무자 중 50%이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수료, 산업기능요원 계약학과 수학 지원
 - 감점 신설 : 정해진 기간내 전직신청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부여
 - * 전직사유별로 제출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규정 확인

* 개정된 규정은 「산업지원 병역일터」 공지사항(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) 에서 필히 확인 바랍니다.



서울지방병무청장